

2024년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 데이터거래와 오픈마켓

- 데이터 사법(私法)의 일환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 상 중 교수

# 목 차

## Contents

A

### • 데이터 私法의 개관

-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법제
- 데이터 私法의 과제와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의 보호

B

### • 데이터의 특징과 데이터 거래관계 개요

- 거래객체인 데이터의 특징과 계약법적 의미
- 데이터 거래법제의 발전현황
- 데이터에 관한 거래관계 개요

C

### •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주요 법률관계

-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개요
- 제공데이터의 하자에 따른 제공자의 담보책임
- 이용자의 제공데이터에 대한 권리
- 제공자와 수령자의 그 외 주의의무

D

### •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관계

-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관계 일반
-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제공계약
- 데이터 제공계약에 관한 데이터플랫폼의 책임

E

### • 공동생성 데이터의 귀속관계와 기여자의 지위

- 수인의 기여에 따른 데이터의 공동생성
- 공동생성 데이터에 대한 기여자의 여러 권리내용
- 기여자의 보유자에 대한 예외적 수익분배청구권

# A

# 데이터 私法의 개관

## 1. 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법제

### 데이터의 산업적 중요성

#### 데이터 산업시장의 국내·국제적 성장

- 2021년 국내 20조원의 시장 규모, 15만 명의 데이터 인력
- 글로벌 차원에서 빅데이터시장의 지속적 성장 (20년→27년 약 20%)

#### 국내 데이터 법제의 형성·구축

- 데이터경제의 기반마련을 위한 산업·시장 차원의 질서마련
- 2021년 제정의 데이터산업법, 2022년 제정의 산업디지털전환법

# A

## 데이터 私法의 개관

### 2. 데이터 사법의 과제와 데이터산업법 등에 따른 데이터 보호

데이터 사법의 과제 : 재산관계에 관한 개인 사이의 분쟁 규율

#### 제1과제

데이터의 귀속관계 (\*소유의 표현 회피)

**Q1.**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소모품 등 자동차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생성

① 운전자 A가 차주 B의 자동차를 시동·운전하고 ② 이를 통하여 자동차에 설치된 C 개발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③ 위 자동차의 제조회사 D가 관리하는 서버 또는 D의 위탁에 따라 저장, 보관하는 E 회사의 클라우드에 생성 데이터가 보관되는 과정

# A

## 데이터 私法의 개관

### 2. 데이터 사법의 과제와 데이터산업법 등에 따른 데이터 보호

데이터 사법의 과제 : 재산관계에 관한 개인 사이의 분쟁 규율

#### 제2과제

타인 생산·보유 데이터의 무단이용 등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

- 넓은 의미의 민사책임

- 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상

- ② 위법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청구 (≒ 소유권·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청구)

- 타인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이용 등에 대한 구제수단의 법적 근거

- :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 법제, 영업비밀보호 등의 부정경쟁방지법제, 민법

## 2. 데이터 사법의 과제와 데이터산업법 등에 따른 데이터 보호

## 데이터 사법의 과제 : 재산관계에 관한 개인 사이의 분쟁 규율

## 제2과제 : 타인 생산·보유 데이터의 무단이용 등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

**Q2.** 한자도서를 정리한 DB 제작자의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A가 자신의 DB에 수록된 상당 부분의 도서(216면부터 340면)를 무단으로 이용한 B에 대하여 무단이용의 중지와 손해배상의 청구 (부산지판 2010.9.2., 2010가합2230)

**Q2-1.** A가 발행하는 물가정보지에 수록된 가격정보 가운데 A의 홈페이지에거 검색순위가 높은 1위부터 100위 사이의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정보를 추출하여 무단으로 이용한 B에 대하여 무단이용의 중지와 손해배상의 청구 (서울중앙지판 2015.11.27, 2014가합44470)

**Q2-2.** 화학회사 C가 관리하는 서버에 T가 무단으로 접근하여 화학공식 데이터를 침탈한 후 이를 R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식이 이미 과학 잡지에서 수차례 게시되어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인 경우 위 데이터에 대한 R의 취득행위가 C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가 ? (ALI·ELI 224)

# A

## 데이터 私法의 개관

### 2. 데이터 사법의 과제와 데이터산업법 등에 따른 데이터 보호

#### 데이터 사법의 과제 : 재산관계에 관한 개인 사이의 분쟁 규율

##### 제2과제 : 타인 생산·보유 데이터의 무단이용 등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

##### • 데이터산업법 제12조 (데이터자산의 보호)

- ①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자산”이라 한다)는 보호되어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형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데이터 사법의 과제와 데이터산업법 등에 따른 데이터 보호

## 데이터 사법의 과제 : 재산관계에 관한 개인 사이의 분쟁 규율

## 제2과제 : 타인 생산·보유 데이터의 무단이용 등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 4) 정당한 권원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제공(...) 행위. (후략)

# A

## 데이터 私法의 개관

### 2. 데이터 사법의 과제와 데이터산업법 등에 따른 데이터 보호

#### 데이터 사법의 과제 : 재산관계에 관한 개인 사이의 분쟁 규율

##### 제2과제 : 타인 생산·보유 데이터의 무단이용 등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

###### • 산업디지털전환법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 ①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중략)
- ④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산업데이터 활용의 목적 및 성격, 산업데이터의 활용이 그 산업데이터의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 ⑥ 산업데이터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 산업데이터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제4항 전단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A

## 데이터 私法의 개관

### 2. 데이터 사법의 과제와 데이터산업법 등에 따른 데이터 보호

#### 데이터 사법의 과제 : 재산관계에 관한 개인 사이의 분쟁 규율

##### 제2과제 : 타인 생산·보유 데이터의 무단이용 등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

##### •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 구조

: 침해대상의 보호필요성, 침해행위의 상당성 등에 따른 비교형량적 판단

##### ▶ 위 법률들의 요건

- ①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소요된 (집적)데이터라는 보호객체
- ② 데이터이용 등의 침해행위가 합리적 거래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 데이터 무단이용 행위의 위법성 판단

: 침해된 데이터의 의미내용, 데이터의 생성·관리 등에 관한 데이터보유자의 투자와 노력의 정도, 침해된 데이터의 양적·질적 측면, 침해행위의 목적과 경위, 공지데이터와 같이 침해데이터의 공개적 접근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Q3.** 포털사업자 A가 지급결제 등의 온라인 사업과정에서 B를 포함한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다른 기업에게 막대한 대가를 받고 처분하는 경우 B의 A에 대한 유상 처분에 따른 수익배분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여부

# A

## 데이터 私法의 개관

### 2. 데이터 사법의 과제와 데이터산업법 등에 따른 데이터 보호

데이터 사법의 과제 : 재산관계에 관한 개인 사이의 분쟁 규율

#### 제3과제

데이터제공,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관계의 법적 규율

- 사적자치의 기본원칙
- 거래가이드라인,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 등에 따른 규율과 촉진
- default rule 제시를 통한 약관 등의 내용통제 가능성

# B

## 데이터의 특징과 데이터 거래관계 개요

### 1. 거래객체인 데이터의 주요 특징과 계약법적 의미

#### 데이터의 무형성, 비경합성

- 인도 이외의 접근 가능성 제공
- 데이터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에 의한 계속 이용가능성
- 양수인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재(再) 제공의 가능성

#### 전자적 방식

- 거래객체인 데이터의 복잡성 및 이에 따른 거래위험의 계약법적 규율의 필요

#### 다기능적·역동적 자원성

- 제공데이터의 이용범위에 관한 계약적 규율
- 파생데이터 등의 부산물에 대한 귀속관계
- 데이터의 결합 및 계약종료시의 반환·삭제 관련 사항

- 거래형태의 다양함, 데이터 집적·규모성의 중요함

# B

## 데이터의 특징과 데이터 거래관계 개요

### 2. 데이터 거래법제의 발전현황

2018

일본 경제산업성의 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2019

한국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 (제공형, 창출형, 오픈마켓형)

2020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조데이터 공유규범(안)

\*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따른 산업통상부 차원의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021

미국 ALI와 유럽 ELI 공동의 '데이터경제의 원칙(Principles for a Data Economy)'의 모델규율

2023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공형, 창출형, 플랫폼)

2024

과기부 산하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준비중)

# B

## 데이터의 특징과 데이터 거래관계 개요

### 3. 데이터에 관한 거래관계 개요

#### 계약의 유형적 분류

물건의 처분(≒ 매매), 물건의 이용(≒ 임대차),  
서비스·노무의 제공 외에 동업약정을 포함한 개별 거래

→ 거래객체인 데이터에 관한 주요 계약관계

- 데이터의 제공(처분, 이용) 외에 데이터의 생성, 결합, 분석 등을 위한 서비스계약, 다수가 각자 보유한 데이터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 pooling 등을 포함한 새로운 거래내용의 개발

### 3. 데이터에 관한 거래관계 개요

#### 데이터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데이터 처리자가 데이터 보유자를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기록, 저장, 분석, 결합, 제거 등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주요 규율내용

- ① 처리자가 보유자의 지시와 이익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
- ② 제3자에 대한 재 제공 및 처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처리행위의 원칙적 금지
- ③ 데이터 보유자가 부담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의무 또는 제한사항의 준수
- ④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파생데이터 등은 처리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그 사무의 본인인 데이터보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 B

## 데이터의 특징과 데이터 거래관계 개요

### 3. 데이터에 관한 거래관계 개요

#### 데이터 pooling 계약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데이터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서버에 제공, 보관하여 이를 공동으로 이용(share)하는 계약

④ 동일한 스마트 기계를 생산하는 여러 제조회사가 기계의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각자의 스마트 기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동으로 관리, 이용하기 위한 약정

#### 주요 규율내용

- ① 합의한 이용목적에 따른 데이터의 이용
- ② 구성원 자신의 이용 외에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원칙적 제한)
- ③ 공동 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파생데이터, 지식재산권의 귀속관계(당해 이용행위를 한 구성원)
- ④ 구성원 탈퇴의 경우 탈퇴 구성원이 제공한 원 데이터의 삭제 여부,  
(다른 구성원의 계속 이용 필요에 따른) 보상조치 및 탈퇴 구성원 스스로 생성한 파생데이터의 회수 내지 복제 기회의 제공 여부

# B

## 데이터의 특징과 데이터 거래관계 개요

### 3. 데이터에 관한 거래관계 개요

#### 데이터 신탁계약 (위임계약의 일종)

1인 또는 수 인의 데이터보유자(= 위탁자 entruster)가 데이터 수탁자(trustee)와 합의하여 데이터보유자가 데이터에 관하여 자신이 갖는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면서 데이터의 제공 또는 이용 등의 행위에서 위탁자 자신에 같음하여 의사결정 등을 행하도록 하는 계약

#### 주요 규율내용

- ① 데이터 수탁자가 데이터보유자인 위탁자를 대신하여 데이터의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의사결정의 권한을 갖는 점
- ② 신탁계약의 특징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
- ③ 위탁자의 지시가 위탁자 본인의 이익에 반함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 신탁사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 ④ 수탁자가 위탁자에 의해 보관된 데이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이해상반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

### 3. 데이터에 관한 거래관계 개요

#### 데이터 에스크로(escrow) 계약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일방 또는 다수의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담보조치자 escrowee)가 개인정보, 경쟁법적 측면에서 데이터 이용에 따른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권한 내지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보해 주는 사무의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 ③ 예) A 기업이 미국의 B 소프트웨어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만약 A 기업이 속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B 회사에 대한 요청만으로 위 데이터에 대한 열람 등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는 보장의 표명을 해 주지 않는 한 자국 고객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B가 A로 하여금 위 고객데이터를 암호처리하여 자신에게 전달하고 그 암호를 풀 수 있 있는 암호키를 제3자 C에게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 C

##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주요 법률관계

### 1.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개요

#### 데이터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데이터 양도(transfer)계약

데이터의 관리·지배권한을 수령자인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이용허락(access)계약

데이터가 보관된 매체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열람, 결합, 포팅 등의 이용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데이터는 물건과 달리 전송, 원격접속 등의 가능성에 따라 수령자의 관리·지배 하에 있는 매체로 전송하거나 수령자로 하여금 데이터를 포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방법으로 제공
- 데이터의 안전성을 위하여 수령자가 지정한 서버에의 전송이 보안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 수령 매체의 변경

데이터 이용허락 계약은 제공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제공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관리·지배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제공자의 지배하에 있는 매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

→ 수령자가 합의한 이용목적에 반하는 데이터이용 혹은 재제공으로 인한 데이터의 가치 하락 여지

# C

##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주요 법률관계

### 1.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개요

#### 데이터 양도계약의 규율내용

제공 데이터의 내용과 대가 외에

- ① 제공방법, ② 법적, 물적 무하자의 보장, ③ 업그레이드 여부, ④ 파생데이터 등의 귀속, ⑤ 양도인의 계속 이용, ⑥ 양수인의 재 제공 등의 이용내용의 제한

#### 데이터 이용계약의 규율내용

이용데이터의 내용과 이용료 외에,

- ① 이용데이터의 법적, 물적 무하자, ② 이용목적, ③ 이용방법 내지 내용 (열람, 결합, 포팅), ④ 파생데이터 등의 귀속문제

# C

##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주요 법률관계

### 1.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개요

#### 데이터 이용허락 계약의 여러 모습

- ① 일정 데이터의 접근·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② 데이터 소스(data source)의 이용계약
- ③ 데이터 수집 등 처리행위의 허락 내지 수인(受忍)
  
- 예) 자동차 제조회사 P가 기상예보 회사인 U와 합의하여 P가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와이퍼, 헤드라이트 등에 의해 운행 도중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 예) 온라인사업자가 메신저 어플과 관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메신저를 이용하는 사람의 게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 동의, 허락을 받아 이용자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 C

##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주요 법률관계

### 2. 제공데이터의 하자에 따른 제공자의 담보책임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 수령자에 대하여 데이터 이용에 관한 법적 하자 없이 자신이 제공하기로 합의한 일정한 상태에 대한 보장책임

**Q3. 개인정보 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포함한 데이터의 제공계약에서 정보주체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결여되어 있어서 수령자가 제공 데이터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

**Q3-1. 데이터 제공자가 데이터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근 3개월 내에 업데이트되었다고 소개한 경우 또는 일정 수의 고객에 관하여 일정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샘플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Q3-2. 타케팅 광고를 하기 위하여 한 온라인쇼핑몰 기업으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Q3-3. 데이터 소스계약에 관한 위 예시에서 와이퍼, 헤드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구매자가 이상 기후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 ?)**

# C

##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주요 법률관계

### 2. 제공데이터의 하자에 따른 제공자의 담보책임

#### 제공자의 수령자에 대한 법적 무하자 보장책임

- 데이터의 이용에 법적 장애가 없도록 제공자의 보장이 필요하며, 가령 정보주체 또는 지적 재산권자의 동의획득, 익명화 처리 등의 보장
- 기준시점은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와 같이 제공 이후 적법한 상태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양도계약에서 제공자의 수령자에 대한 책임 여부

#### 제공자의 수령자에 대한 물적 무하자 보장책임 (품질보장)

- 데이터의 안전성, 최신성, 정확성 등에 관한 제공자의 보장책임
- 제공자가 제공데이터에 관하여 행한 기술, 표시, 제공 샘플 또는 이용목적에 따른 개별 협의 (맞춤형)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 하자 여부의 판단
- 이용자의 주관적 효용, 사용목적에의 부합 여부 (책의 내용, 파지)

## 2. 제공데이터의 하자에 따른 제공자의 담보책임

###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에 따른 데이터 담보책임

####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 제8조(데이터 등에 대한 보증 등)

- ① 갑은 을에게 제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취득되었음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한다.
- ② 갑은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데이터에 하자 또는 결함이 없음), 안전성(데이터에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가 없음), 유효성(본 계약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고, 데이터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 ③ 갑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그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였음을 보증한다.
- ④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식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 그 밖에 을의 데이터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지식재산권자부터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조치 등 을이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략)

# C

##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주요 법률관계

### 3. 이용자의 제공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의무

#### 양도형 계약에서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

- 데이터 양수인에 의한 (법 위반이 아닌 한) 임의적 사용, 처분의 권한
- 양수인에 의한 재 제공의 권한, 원래 계약에서 제시한 목적과 다른 목적에의 데이터 이용의 자유 (default)
- 양도인과의 경업활동, 경쟁업체에 대한 재 제공의 금지에 관한 개별약정
- 제공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파생데이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양수인 귀속원칙
- 양도인에 의한 계속 이용의 가능성 (데이터 특성에 따르면 default)

#### 이용허락형 계약에서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

- 데이터 제공자와 합의된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권한의 한정
- 데이터의 이용내용 (열람, 결합 및 처리결과의 포팅 여부)과 방법 (자동화된 방법을 통한 이용가능성)에 관한 합의와 기본값의 설정

## 3.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의무(예시)

###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 제4조(데이터의 사용·수익)

-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본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갑의 데이터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 ② 을의 사용·수익권은 데이터의 내용을 변경, 정정,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본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이 없으면 본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제3자(을이 법인인 경우 그 계열사, 관련회사도 포함)로 하여금 데이터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 제6조(파생데이터)

- ① 을은 갑의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발생한 파생데이터의 사용·수익권한을 가지며, 을은 갑으로 하여금 ○○의 범위에서 파생데이터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을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발명, 고안, 창작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C

##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주요 법률관계

### 3.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의무(예시)

####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 제10조(데이터 관리의무)

- ②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 제12조(데이터의 유출 시 조치)

-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데이터 유출등의 원인을 분석·파악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이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 C

##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주요 법률관계

### 3. 이용자의 제공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의무

#### 이용허락형 계약에서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

**Q5.** 자동차제조회사 P로부터 신형모델 개발 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하여 U가 자신이 P에게 공급한 엔진성능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 위의 데이터를 다른 무인자동차 모델에 부착할 신형 엔진 개발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Q5-1.** 위 Q 5에서 데이터의 이용허락을 받은 U가 P가 관리하는 서버에서 위 데이터를 열람하고 P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가공, 분석한 후에 그 분석결과를 U 자신의 서버로 포팅할 수 있는지 여부

## 4. 제공자와 수령자의 그 외 주의의무

### 제3자의 권리·법익 보장에 관한 제공자의 주의와 책임

- 제공·유통의 데이터가 지적재산권, 개인정보법제, 약정내용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제공자가 이용자와의 제공계약에서 법적 보호에 대한 주지, 약정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 승계
- 산업데이터제공형 표준계약서 - 제9조(개인정보의 처리) ④: 갑은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 재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 을의 데이터 접근을 장소적, 물리적으로 제한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을에게 암호화조치 등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데이터의 전전유통, 즉 데이터 생산·보유자(최초 제공자) – 중간취득자 – 최종이용자의 연속적 제공관계에서 최종이용자의 위법한 데이터이용행위에 따른 중간취득자의 손해배상권리의 최초 제공자에 대한 양도의 법제 제안 (ALI-ELI 제33원칙)

# 데이터 제공(양도·이용)계약의 주요 법률관계

## 4. 제공자와 수령자의 그 외 주의의무

### 무권한의 제공데이터에 대한 수령자의 주의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참고

- 기술적 안전장치의 무력화, 피싱 등에 의한 접근번호 등의 부정취득에 따른 권한없는 데이터 취득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는 수령자의 원 데이터 보유자에 대한 책임

### 무권한의 제공데이터에 대한 수령자의 주의사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참고

Q6. 부동산 사업을 하는 A가 자신 소유의 건물 X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자 B로 하여금 관련 데이터의 수집 등의 사무를 맡기면서 데이터의 외부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해 두었는데, B가 전망이 좋은 건물 X의 사진데이터를 C에게 제공하는 행위 vs. 건물 X에 관한 데이터를 위 건물을 매수하려고 A와 협상하는 D에게 제공하는 행위

Q6-1. 스타트업 S가 무인로봇을 개발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T로부터 막대한 데이터를 구입하였는데, 사후에 T가 위 데이터를 부정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 D

##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관계

### 1.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관계 일반

- 양면시장의 특성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플랫폼 입점 업체, 플랫폼 이용고객 사이의 3면 관계 형성
- 플랫폼 입점업체와 이용고객 사이의 물품 등의 거래관계 존재
-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 거래관계의 장애에 대한 주의의무와 책임

# D

##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관계

### 2.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데이터 제공계약



## 3. 데이터 제공계약에 관한 데이터 플랫폼의 책임

- NFT 마켓플레이스의 거래대상인 NFT의 저작권 침해 확인 조치의무

**Q7. 예술저작권을 침해하여 제작된 NFT의 거래·유통에 관여한 NFT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저작권 위반사실의 확인의무 인정 여부 (중국판결)**

“마켓플레이스는 거래시 수수료를 부과해 자사 플랫폼에서 NFT로부터 직접 수익을 내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용자 행위를 막는데 책임이 있다”

- 데이터 제공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데이터 플랫폼의 관여

- 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결정 ‘아디다스 결정’- 다음 슬라이드 참고

## 4. 대법원 2012. 12. 4. 선고 2010마817 결정 '아디다스 결정'

- 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 다만,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①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5. ALI·ELI 원칙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에 관한 원칙 제15조

- 거래와 관련된 특정 단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한, 해당 단계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어 고객에게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a호).
- 예상되는 거래의 대상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자기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b호).
-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거나 종료되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제공자는 예상되는 거래의 대상이 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관리 하의 데이터와 이러한 데이터에서 파생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c호).

## 5-1. 산업데이터 표준계약서 : 산업데이터플랫폼형 표준계약서

### <제14조(면책)>

- ②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 ③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 ④ 플랫폼운영자는 데이터이용자 사이 또는 데이터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데이터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 1. 플랫폼운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 2. 플랫폼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 3.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 4. 다른 데이터이용자 또는 제3자가 데이터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플랫폼운영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 1. 수인의 기여에 따른 데이터의 공동생성

**Q8.**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소모품 등 자동차관리를 위한 데이터의 생성

① 운전자 A가 차주 B의 자동차를 시동·운전하고 ② 이를 통하여 자동차에 설치된 C 개발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③ 위 자동차의 제조회사 D가 관리하는 서버 또는 D의 위탁에 따라 저장, 보관하는 E 회사의 클라우드에 생성 데이터가 보관되는 과정

- 여러 사람이 데이터의 생성에 관여한 공동생성 데이터의 경우 그 이용을 포함한 권리귀속에 관한 공동생성자의 합의 자유 외에 법률적 지위 보장 (거래비용의 감소와 교섭력의 불균형에서 비롯한 시장실패의 해소)

- 데이터의 생성에 공동관여한 자는 정보주체, 당해 정보를 생성하는 장치의 소유자, 데이터를 생성하는 행위를 하는 자 외에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자를 포함함.

## 2. 공동생성 데이터에 대한 기여자의 여러 권리내용

### 데이터에 관한 私法的 권리내용

- ① 데이터의 이용을 위한 접근권한
- ② 위법한 데이터처리행위에 따른 데이터의 삭제조치 또는 수정요청 (원상회복 조치)
- ③ 데이터 이용 등에 따른 수익참여의 권한

- 공동생성에 기여한 행위의 비중과 정도, 생성된 데이터의 성격 내지 내용 등에 따른 권한의 부여와 경쟁법적 목적의 고려

Q8-1. 스마트카 운전자가 수많은 다른 차량과 함께 기후, 교통 데이터의 생성에 관여하거나 질병치료방법의 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질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환자의 임상정보

Q8-2. 스마트카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에 생성한 엔진상태, 이동장소, 기후 관련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 2. 공동생성 데이터에 대한 기여자의 여러 권리내용

- 데이터의 생성에 공동 관여한 자가 데이터 보유자에 대하여 그 이용, 접근을 허락받게 되는 경우

**Q8-3.** 스마트 농기구 제조기업으로부터 스마트 농기구를 구입하고 그 농기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계작동 등의 데이터를 생성한 농장운영자가 제품 수리 등 통상적 이용, 중고 제품 판매 등을 위하여 데이터 보유자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공동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이용, 열람을 요청하는 행위

**Q8-4.** 위의 Q 8-3에서 농장운영자가 새로운 스마트 농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면서 다른 제품과의 비교평가를 위하여 공동생성 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lock-in 효과의 회피)

### 3. 기여자의 보유자에 대한 예외적 수익분배청구권

#### ALI · ELI 모델법안 제23원칙

공동생성 관여자의 이익분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① 기여자의 행위가 다른 자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을 정도로 고유한 기여를 하였거나 기여자가 상당한 노력 또는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 ② 데이터 보유자가 창출한 이익이 과도하게 높을 것, 그리고 ③ 이익분배를 청구하는 관여자가 사전에 금전적 보상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없었을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Q8-5. 암환자 P가 유전적 특이점을 갖고 있는데, 병원이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환자에게 임상실험을 실시하여 치료법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된 경우

- 품질평가와 가치산정의 기술발전
- 개인정보 주체의 보호와 데이터 유통의 원활 사이의 긴장관계
- 데이터 제공약정에 대한 공정경쟁 목적 등에 따른 내용통제
-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고에 따른 데이터 사법(私法) 문제의 해결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023.
- American Law Institute, European Law Institute (ALI-ELI), Principles for a Data Economy – Data rights and transaction, 2021. (국문 번역 : 이성엽·정신동·황원재 ALI-ELI 데이터 경제 제 원칙 –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권리, 고려법학 제107호, 2022, 493)
- 이성엽(편) / 김상중, 데이터와 법,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2023, 349.
- 이동진, 데이터거래의 법적 쟁점 및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이슈페이퍼, 2020.
- 정원준,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2.
- 정신동, 데이터 경제에 있어 계약관계의 규율, 고려법학 제105호, 2022, 1.
- 이성엽(편) / 권영준, 데이터와 법,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2023, 66.
- 이상용, 데이터세트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2023.
- 김상중, 데이터 경제를 위한 데이터소유권의 문제, 저스티스 제194-2호, 2023, 54.

2024년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감사합니다.